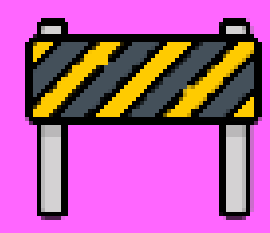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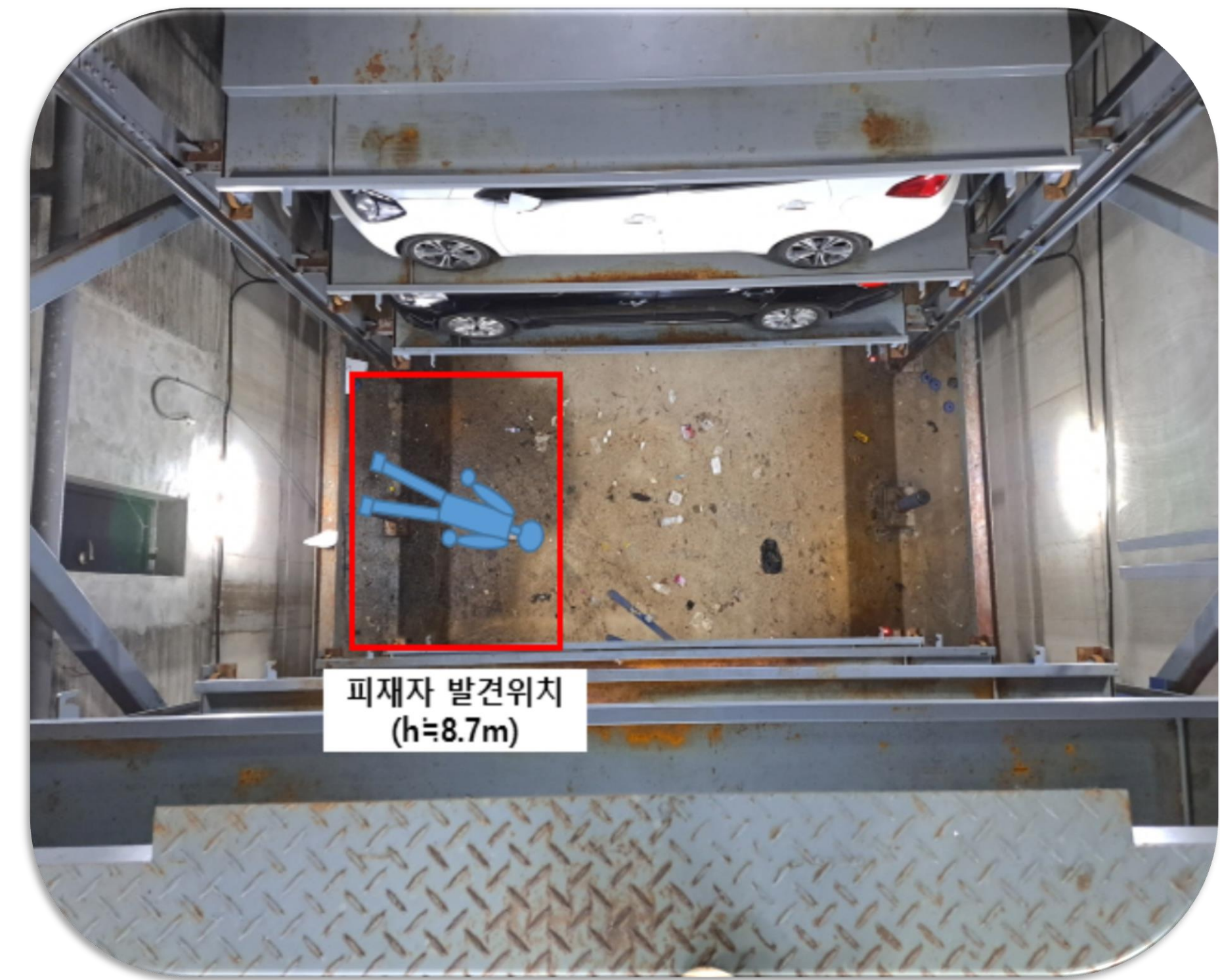
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추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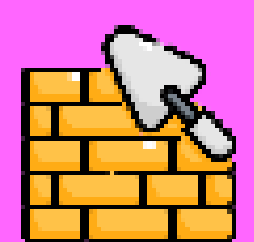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떨어짐	사망 1명	76세	-

2022. 06.00(금) 00:00경 서울소재 000건물에서
피해자가 기계식 주차장 1층 내부로 들어간 후
리프트* 상승으로 형성된 개구부를 통해 피트(pit)바
닥으로 떨어져(약 8.7m) 사망한 재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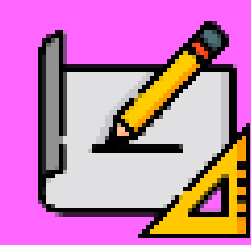
* 리프트 : 주차장치에 입고된 차량을 팔레트에 싣고 각 층으로
이동시키는 승·하강 장치

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정상)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추락 위험, 설비에 끼임 위험 등이 있으므로 주차장 내부 진입 금지
- (비정상) 기계식 주차설비 리프트 상승 시 개구부 형성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차량이 입고 중인 상태에서 내부로 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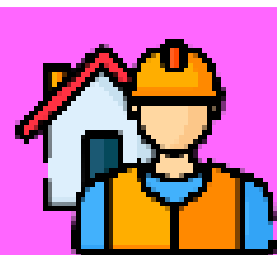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출입금지 미준수) 차량이 입고 중인 상태에서 주차장 내부로 진입

2 기여요인

- (안전장치 미흡) 기계식 주차장 내 사람이 있을 경우 감지되어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
- (위험요인 미파악) 기계식 주차장 작동 중 내부 출입 시 추락위험 등 근로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·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위험성평가 미 실시



예방대책

1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출입금지 철저

- 기계식 주차설비 작동 시 개구부로 떨어짐 위험, 설비에 끼임 위험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주차장 내부 진입 금지
- 부득이하게 주차장 내부로 진입시에는 전원 차단 또는 조작판넬에 시건장치나 관계자 외 조작금지 표지 설치, 교대 근무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실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없도록 사전 안전조치 실시

2 기계식 주차설비 안전장치 개선

- 기계식 주차장 내 사람이 있을 경우 감지하여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개선
* 설치된 동작감지 센스의 경우 사람이 움직이지 않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 리프트가 상승할 수 있음

3 위험성평가 실시

-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기계식 주차장 작동 중 내부 출입 시 떨어짐 위험 등 근로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위험성평가 실시

4 야광복 착용

- 야간 또는 새벽 근무 시 입주민 등이 근로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야광조끼 등 야광복 착용

